

도축산업 경쟁력 강화대책 '시동'

〈편집 : 미트저널사〉

정부가 국내 도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 방안을 시행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축장구조조정을 촉진시키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거점별 혹은 지역별 대표 도축장을 선정하고 각종 정책사업을 집중 지원해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현행 도축장 위생 및 품질기준을 대폭 강화해 세계 일류기업과 경쟁하는 선진 도축산업으로의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어서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해 발표된 '도축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은 전문가 협의회, 지역별 순회 도축장경영자 간담회 및 지자체 관계자 간담회 등을 토대로 마련됐다.

강화대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국내 도축산업을 선호해 나갈 경쟁력 있는 도축장을 선별해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며 위생수준과 시설구조 그리고 경영관리능력 등을 평가해 총 26개소 내외를 선정한다. 구체적으로는 거점 도축장 20개소, 통합 도축장 6개소 등이며 이들 도축장에는 각종 정책사업을 중점지원하는데 2011년에는 총 3천억원 수준이 지원될 예정이다.

참고로 '거점 도축장'은 현재 도축업을 영위하고 있는 도축장으로 향후 축산통합경영체로 발전할 가능성을 갖춘 도축장이다. 또한 '통합 도축장'은 거점 도축장 외에 지역별로 도축장이 필요한 장소에 기존 도축장을 통합해 신규 설치하는 도축장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와 함께 도축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도축장 구조조정 촉진 방안을 함께 추진한다.

우선 조기폐업을 유도하기 위해 도축장 구조조정자

금의 지급률을 연차적으로 차등화 한다. 조기 폐업 업체는 지급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오는 '12년 이후에는 지급금액을 감액해 나간다. 또한 구조조정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도축장구조조정추진단이 구성, 운영된다.

국내 도축장 위생·안전수준 선진국 수준 강화

대대적인 도축장 구조조정 및 통폐합 추진과 함께 정부는 국내 도축장의 위생·안전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도축장에 대한 위생관리를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도축장에서 배출되는 소·돼지고기의 심부 온도 기준을 10℃ 이하로 신설하고 포장유통을 의무화 시켜나간다는 방침이다. 단 심부온도 10℃ 이하와 포장유통 의무화는 도축 규모별로 오는 '13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구체적으로는 '13년-1일 2천두 이상(대규모) 도축, '14년-1일 1천두 이상(중규모), '15년 1일 1천두 미만(소규모) 순으로 점진적 적용된다. 이와 함께 도축장의 HACCP(위해요소조점관리기준) 이행여부를 검사관이 상시 점검토록 하고 부적합한

경우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현행 HACCP 미 준수시 과태료 150만원, 경고~영업정지 1월이 과태료 500만원, 영업정지 15일~3월로 강화, 조성된다.

아울러 도축장의 위생관리 수준에 대한 정보공개가 강화되고 도축업 허가권한은 현행 시·도지사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으로 이관된다.

특히 가축사육두수, 연간 도축물량, 육류 소비량 등

을 기준으로 오는 '15년 이후 국내 도축시설의 적정규모를 산출, 그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 도축업의 신규허가를 제한하는 제도인 '도축장 전국 총량제' 도입이 추진되며 '허가 유효기관 제도'도 마련된다.

참고로 허가 유효기관 제도는 일정한 주기(5~7)로 도축업 시설기준 및 위생관리 실행계획 등을 심사해 기준에 적합하면 다시 허가하는 제도이다.

도축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요약)

도축장 위생관리 강화(축산물위생관리법령 개정)

- 도축장 위생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 도살·처리기준 중 식육 심부온도 기준 설정 및 식용부산물 등의 위생적인 처리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도축장에서 반출되는 소·돼지고기 심부온도 기준 산설(10℃ 이하) 및 포장유통 의무화하고 냉장유통 기반조성 및 부분육 유통비율 등을 감안하여 '15년 이후 자육 반출 금지 추진한다. 또 위생관리기준의 현행 기준을 좀 더 세분, 구체화하여 도축장에 적용할 개별 표준위생관리기준(SSOP)을 마련, 제시하며 시설기준에서 미국·일본 등의 기준과 비교, 미흡한 부분 개선토록 한다.
- 도축장의 HACCP 이행여부 상시 점검 실시 : 검사관 임무에 HACCP 이행여부 점검 업무를 추가해 매일 도축 전·후 위생상황, HACCP기준 준수여부 확인하고 도축검사원 인력도 '12년 90명으로 총원한다. 또 HACCP 실시상황에 대한 점검 강화는 물론 개선조치 미흡 또는 부적합 반복 발생 시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 (현행) 위생관리기준·HACCP 미준수 시 과태료 150만원, 경고~영업정지 1월→ (개정) 과태료 500만원, 영업정지 15일~3월
- 도축장 HACCP 실시상황 평가기준 및 방식 개선 : 내장 등 식용부산물 처리에 관한 HACCP 평가기준을 신설하고 HACCP 평가 시 미생물 오염도 조사를 병행하여 위생수준을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도축장의 위생관리 수준 등에 관한 정보공개 강화
- 도축업 허가관리 제도 강화 추진 : 도축업 허가권을 농식품부장관(겸역원장 위임)으로 이관 추진, 도축장별 1일 최대 도축물량 지정 및 부산물 관리 강화, 허가 유효기간 제도 및 도축장 '전국 총량제' 도입 추진

도축장 구조조정 촉진방안 추진

도축장 구조조정자금 지급금액 조정

- 조기 폐업 유도를 위해서 연차적으로 지급률을 차등화해 조기폐업 업체는 지급금액 상향, '12년 이후는 지급금액을 감액한다. 또 구조조정자금 조성을 위한 분담금 거출 강화해 분담금 체납업체에 대해서 연체이자 부과 및 지급금액을 감액할 계획이다. 한편 도축장구조조정추진단을 구성·운영해 구조조정 계약요인 지속 발굴·해결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도축장구조조정자금 지급금액 조정(안) 예시)

지급률(%)	150~130	130~110	100	100~90	100~90	100~90